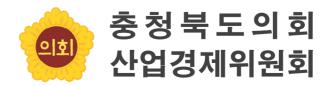
도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3. 3. 22.(수) 제 4 0 7 회 임 시 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**출**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,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·운영 및 육성사업의 추진·지원 근거 등 효율적인 드론산업의 육성·지원체계 구축 등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드론산업 육성계획(5년) 및 시행계획(1년) 수립ㆍ시행(안 제4조)

다.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· 구성 · 운영 등(안 제5조 ~ 안 제10조)

라. 드론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업지원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

마. 수탁자등에 대한 지도・감독(안 제13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현행 조례는 충북도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 4월 10일 제정되었음
- 드론산업은 기술파급력이 높은 ICT융합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미래항공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충북도 내 기존 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해 드론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・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- 또한 현행 조례 시행과정에서 위원회 운영 등과 사업추진에 있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, 전부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

- O 이 조례안은 본칙 14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안 제4조는 드론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드론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
- O 안 제5조는 '위원회 설치 및 기능'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 - 현행 조례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데 반해, 개정안에는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였으며,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는데, <u>차후 실무위원회 없이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</u>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

- O 안 제6조는 '위원회 구성'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 - 제2항과 제5항은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**과학인재국장**으로,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**업무 담당 과장**으로, 제4항에서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'격하'한 것과 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심의·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 하도록 하여 관(官) 주도의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임
 - 이것은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고, 실질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은 설득력은 있으나,
 - 드론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기술력과 경험 등 민간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주도가 아닌 관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등이 우려되어 <u>심도있는</u> 검토가 요구되며,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
- 안 제7조는 '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'에 관한 사항으로,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1항과 비교 할 때, 안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 등의 사유를 제1호 에서는 강화한 반면, 제3호에서는 완화하였음
 -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증언, 감정 외에 <u>진술, 자문,</u> 연구,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·기피·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
- 안 제11조는 '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'으로 현행 제8조 (각종 지원사업)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임
 - 다만, 현행 조례 제9조에는 '산·학·연 협력체계의 구축' 조항이 있고, 이에 따라 4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, 안 제11조제5호에 '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'을 추가하는데 그쳤음

- 산·학·연 협력체계의 구축은 이들의 협력을 통해 드론산업 활용 연구와 개발을 비롯하여 드론 활용 인력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, 이를 <u>전부개정에 반영하지 않은</u> 이유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

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중요성과 사업 규모의 증가, 드론의 활용도 증가 등에 따라 드론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관련 사항과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,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만,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두도록 강행규정화 했는데, 위원회 구성을 '격하'한 점, 현행 조례의 실무위원회를 삭제한 점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있어 그 조건을 완화한 점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,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편·타당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